

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1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5. 10. 이정숙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: 2023. 5. 1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3. 6. 02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 3. 2.)」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 『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(2022. 12. 20.)』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한 경우의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준용(안 제3조의2)
나.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(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)
다. [별표] 삭제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,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8제1항,
「공무원여비 규정」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16호

- 입법예고 기간: 2023. 5. 12. ~ 2023. 5. 17.
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관계 법령 저촉 여부: 해당사항 없음

○ 주요 내용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 3. 2.)」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 반영

- 국민권익위원회 『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(2022. 12. 20.)』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한 경우의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

○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라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액 및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8. 토 론: 없음.

9. 심사결과: 2023. 6. 2. 원안가결